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인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586

발의연월일: 2025. 5. 22.

발 의 자:조인철・이개호・박수현

주철현 • 문진석 • 한정애

박민규 • 박용갑 • 정진욱

이해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전파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,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, 사고대응,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.

그런데 최근 침해사고의 발생으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 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극적 대응과 미흡한 이용자 피해 구제 조치 등으로 인한 금융정보 탈취, 신원 도용과 같은 2차 피해의 발생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용자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음.

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사고 관리·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 제출 명령을

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조치 및법적 책임성을 제고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48조의7및 제48조의8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의2제5항 중 "한다"를 "하며,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에게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하는 경우 침해사고의 예보·경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신속하게 방송하도록 요청하거나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신속하게 문자·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요청할수 있다.

제48조의4제1항 중 "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,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"를 "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

조 제2항 중 "방지를"을 "방지와 이용자 피해의 구제를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"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"을 "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"로, "요구할"을 "명할"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"침해사고의"를 "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확인과"로 한다.

- 1.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그 결과에 따른 사고대응, 복구 및 재발 방지 조치
- 2.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의 구제 조치
- 1. 침해사고 발생 여부의 확인
- 2.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

제48조의7 및 제48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8조의7(침해사고 관리·대응 매뉴얼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사고 관리·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.
 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안 마련 및 보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"이라 한다)는 제1항의 표준안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 성에 적합한 침해사고 관리·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

통신부장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
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 관리·대응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,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자등은 이를 따라야 한다.
- ⑤ 그 밖에 침해사고 관리·대응 매뉴얼의 작성·운용 및 제출·점 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8조의8(이행강제금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한 경우 그 자료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만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매출액이 없거나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.
 -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·납부·징수·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

- 에 관하여는 「행정기본법」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.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 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제76조제2항에 제4호의5 및 제4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4의5. 제48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관리·대응 매뉴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
 - 4의6. 제48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) 제4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사고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48조의2(침해사고의 대응 등) 제48조의2(침해사고의 대응 등) ① ~ ④ (생 략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나 한국인터넷진흥워은 제2항 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침해 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당하게 사용하여 야 한다. -하며, 제3<u>자에게 제공하거나</u>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⑥ (생략) ⑥ (현행과 같음)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<신 설> 국민에게 침해사고 관련 정보 를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하는 경우 침해사고의 예보 · 경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신속하게 방송하도록 요 청하거나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 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48조의4(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,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 고 피해 확산 방지, 사고대응, 복구 및 재발 <u>방지를</u> 위한 대 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(공공기관등은

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
이를 신속하게 문자·음성 송
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
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제48조의4(침해사고의 원인 분석
등) ①
<u>피해</u>
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
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그
1.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그결과에 따른 사고대응, 복구
결과에 따른 사고대응, 복구
결과에 따른 사고대응, 복구 및 재발 방지 조치
결과에 따른 사고대응, 복구 및 재발 방지 조치 2.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
결과에 따른 사고대응, 복구 및 재발 방지 조치 2.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 해의 구제 조치
결과에 따른 사고대응, 복구 및 재발 방지 조치 2.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 해의 구제 조치
결과에 따른 사고대응, 복구 및 재발 방지 조치 2.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 해의 구제 조치
결과에 따른 사고대응, 복구 및 재발 방지 조치 2.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 해의 구제 조치
결과에 따른 사고대응, 복구 및 재발 방지 조치 2.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 해의 구제 조치

제외한다)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.

- ③ ~ ⑤ (생 략)
-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 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 ·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. 다만,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2 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 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 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<u><신</u> 설> <신 설>

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나 민·관합동조사단은 제6항 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6
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를
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
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
명할
<u>.</u>
1. 침해사고 발생 여부의 확인
2.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
책 마련
⑦

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<u>침</u> <u>해사고의</u>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 지 못하며,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.

⑧ (생 략)<신 설>

				- <u>침해사</u>
고의	발생	여부	확인과	
		-		

⑧ (현행과 같음)

제48조의7(침해사고 관리·대응 매뉴얼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사고 관리·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.
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안 마련 및 보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"이라 한다)는 제1항의 표준안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에 적

합한 침해사고 관리·대응 매 뉴얼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과 한국인터넷진흥 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새 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 도 또한 같다.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 관리· 대응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 로 점검하여야 하며,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를 따라야 한다. ⑤ 그 밖에 침해사고 관리·대 응 매뉴얼의 작성·운용 및 제

응 매뉴얼의 작성·운용 및 제 출·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8조의8(이행강제금 등) ①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8조의 4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료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

<신 설>

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, 이를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대출액의 1만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-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·납부· 징수·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·징수에 관하여는 「행정기본 법」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 지에 따른다.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 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

제76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4의4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<u><신 설></u>

③ • ④ (생 략)
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
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제76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
1. ~ 4의4. (현행과 같음)
4의5. 제48조의7제3항을 위반하
여 침해사고 관리 • 대응 매뉴
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
4의6. 제48조의7제4항을 위반하
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
<u>자</u>

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